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09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박용갑 · 이병진 · 조인철
소병훈 · 박희승 · 김영환
서삼석 · 박수현 · 문진석
정준호 · 염태영 · 황정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은
대학병원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중 “보조”를 “보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국가는”으로, “설치를 위하여”를 “설치, 증축·개축,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예산·기금의 보조 및 지원의 기준·관리”로 한다.

③ 국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별)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은 대학병원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u>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u>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등) ① <u>국가는-----설치, 증축·개축,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u>	③ <u>국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u>

<u>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u> <u>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u> <u>보조할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⑤ (생 략)	<u>을 위한 경비를 예산 또는</u> <u>「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u> <u>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u> <u>있다.</u> ④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예산·기금의 보조 및 지 원의 기준·관리----- -----. ⑤ (현행과 같음)
--	--